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형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6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형연·정춘생·황운하
김준형·서왕진·차규근
신장식·강경숙·김선민
김재원·박은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 한동훈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및 사건 관계
인들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
는 자료와 함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였음.

특히 국회의원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건은 김승원 후보자 사
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수사팀이 김승원 후보자를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작성하
여 대검찰청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수사자료로서, 재판과정
에 제출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조차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득

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한동훈은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득·전달 경위는 수사를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의원 한동훈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 관계인들의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이 적법한 수사권의 행사로 수집·작성한 수사자료와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함. 만약 수사기관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수집·작성한 수사자료가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국가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 관련 자료가 실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집·작성·보관된 자료인지, 전·현직 검찰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공하였는지, 국회의원 한동훈이 어떠한 경위로 이를 취득·보관·이용 또는 공개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그 밖의 범죄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건은 의혹의 대상 자체가 검찰이 작성·보유한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업무관리시스템(D-NET)에 보존할 수 있도록 대검예규로 정한 윤석열을, 조국혁신당이 2024. 3. 고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수집·보관·열람·반출·제공 경위와 국회의원 한동훈의 해당 자료 취득·이용 및 공개 경위, 그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 등에 관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것임.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집·작성·취득 또는 보관한 수사보고서, 사건처리계획 및 기소계획 관련 문건, 녹음파일·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정보, 전자정보,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수사자료가 국회의원 한동훈 또는 제3자에게 위법하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었다는 의혹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건
2. 국회의원 한동훈이 제1호에 따른 수사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전직·현직 검찰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보관하고 이를 공개·제공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의 교사·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그 밖의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직·현직 검찰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수사자료의 작성·보관·열람·복제·출력·반출·전송·제공 또는 누설에 관여하거나 그 경위를 은폐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② 제1항에서 “관련 사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한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위증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감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감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감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법원행정처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감사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관·공소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공판기록·증거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검사는 1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직무·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에게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 수사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파견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사기간)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의 이첩) ① 특별검사는 제2조에 따른 사건을 다른 수사기

관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특별검사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정보 취득·공개 또는 그 자료의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고소·고발 사건은 특별검사의 이첩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및 공소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판기간) 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은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및 직무승계)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다.

②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③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9조(재판관할)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직무수행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 ① 특별검사등 또는 파견공무원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 또는 파견공무원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완료하고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이 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청법」 등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청법」이 시행되거나 수사와 공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수사, 영장청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 직무·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절차와 특별검사·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검사 또는 파견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다.